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의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327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 10. 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 07. 11.

『데일리반점』 정보공개서

[㈜기영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기영에프앤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 기영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800-819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576-1160 (7층) / 02-577-1160 (8층) / 02-578-1160 (9층)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팀, 주소 및 전화번호 상동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데일리반점]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외 22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 기영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8.11.	2017.8.21.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법인등록번호	170111-0651902	사업자등록번호	699-87-0067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강 인 규/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외 22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이 기 영/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외 22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안 재 규/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외 22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배 주 현/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외 22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이 영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외 22개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데일리반점』 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데일리반점	중식 전문점
상 호	데일리반점 ○○점	
상 표 (서비스표)	출원상표 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2,180,405	15,153,295	7,027,110	86,446,451	3,564,040	3,627,513
2022년	20,731,135	10,376,491	10,354,644	92,766,561	3,232,937	3,423,535
2023년	29,130,589	13,948,770	15,181,818	107,584,937	6,192,542	4,827,173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강 인 규	대표이사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0. 8. ~ 2024. 3	【㈜기영에프앤비】 대표이사	업무총괄
	이 기 영	사내이사	2017. 8. ~ 2024. 3	【㈜기영에프앤비】 대표이사	업무총괄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경영지원
	안 재 규	사내이사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경영지원
	배 주 현	사내이사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가맹운영
	이 영 운	사내이사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창업전략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10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16.7.~현재	두점(등록번호 : 2016085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19.9.~현재	백참(등록번호 : 2019095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0.11.~현재	떡볶이 참 잘하는집, 떡참(등록번호 : 20201348)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사이공(등록번호 : 20213274)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국식(베트남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누들(등록번호 : 20213273)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국수)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닭갈비(등록번호 : 20213272)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닭갈비)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비어(등록번호 : 20213271)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곱창(등록번호 : 2021327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키트(등록번호 : 20213275)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밀키트)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찌개(등록번호 : 20213280)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족발(등록번호 : 2021328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카츠(등록번호 : 20213284)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돈까스, 우동, 메밀)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피자(등록번호 : 20213282)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라이스(등록번호 : 20213269)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덮밥, 비빔밥)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브레드(등록번호 : 20213268)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 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도시락(등록번호 : 20213276)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미트(등록번호 : 20213277)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고기류)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반점(등록번호 : 20213279)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버거(등록번호 : 20213278)라는 영업표지의 패스트푸드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김밥(등록번호 : 20213285)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치킨(등록번호 : 20213281)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커피다운(coffee down)(등록번호 : 20213266)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2.05.~현재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등록번호 : 20213267)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숯불치킨)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현재 없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데일리반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당사는 신청일 현재 『데일리반점』의 가맹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 『데일리반점』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이기영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 기영빌딩
(주)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강인규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 기영빌딩

3. 『데일리반점』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데일리반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짜장, 짬뽕 등 중식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데일리반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데일리반점』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6. 『데일리반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데일리반점』 외에도 가맹본부가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단위 : 개)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두점	20160858	한식 (점담)	571/0	588/1	592/0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떡볶이 참 잘하는집, 떡참	20201348	분식	300/1	323/1	119/0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백참	20190957	한식 (백숙)	3/0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아이공	20213274	기타외국식 (베트남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누들	20213273	기타외식 (국수)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닭갈비	20213272	한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비어	20213271	주점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곱창	20213270	한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키키트	20213275	기타외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찌개	20213280	한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족발	20213283	한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카츠	20213284	일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피자	20213282	피자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라이스	20213269	한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브레드	20213268	제과제빵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로시락	20213276	한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미트	20213277	한식 (고기류)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버거	20213278	패스트푸드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김밥	20213285	분식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데일리치킨	20213281	치킨	-	-	-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20213267	치킨 (숯불치킨)	-	70/1	175/0
가맹본부	(주)기에프앤비	커피다운 (Coffee Down)	20213266	커피	-	0/1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데일리반점』은 2023년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개점한 가맹점이 없어, 발생한 매출액이 없습니다.

8. 『데일리반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데일리반점』은 2023년 영업중인 가맹점이 없어 평균 영업기간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데일리반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데일리반점』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판촉 비용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기영에프앤비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예치금 범위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의결일자)	조치내용
(주)기영에프앤비 [두점]	의결(제2022-140호) (2021가조1390)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7조 제3항)	2022.06.03.	시정조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 제1항)		과징금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데일리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 실시)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 실시)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내역	금 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	가맹점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가 맹 계 약 체결과 동 시	반환 안됨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교육비	[2,200]	가맹점운영에 관한 교육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 계	[7,700]				

▶교육비는 2명 기준이며, 2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금 일백일십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 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당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	- 물품대금 미지급, 가맹본부 공급물품 파손 등 -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 -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등의 의무)의 미이행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 초 가 맹 금	[7,700]	포함
계 약 이 행 보 증 금	[3,000]	없음
합 계	[10,700]	-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점포 규모별로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 49.5 m²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합 계		[58,100]	[3,873]	-		-
인테리어	자율선택	[25,000]	[1,667]	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
간판		[4,000]	-			-
가구	가맹본부	[5,000]	-	-		지정제품
기기		[15,600]	-	지정제품(변경될 수 있음)		지정제품
집기비품/홍보물		[5,000]	-	물품공급 3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		[3,500]	-	물품공급 3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POS시스템		임대	-	-	-	
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3.3 m ² 당 [220]을 기획관리비로 청구할 수 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비용은 철거공사, 음향시설, 상하수도, 전기증설, 화장실, 냉난방기, 도시가스, 외부테라스 및 인테리어, 폴딩도어, 소방공사 등에 따라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승인기준 (종합적 검토) - 기존 가맹점과의 상권중복여부 - 점포의 전용면적 - 가시성 및 접근성 - 주변 상권 및 식음료업 분포 - 물류가능성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피고용인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만 18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데일리반점』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보수 교육비	1인당 1일 [110] (십일만원)	당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금	광고 분담기준에 의함		매월 말일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비	실제 소요되는 판촉비용 중 귀하 부담분		행사별로 분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환경개선 공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매월 금 [220] (이십이만원)		익월 10일 이내	반환안됨	소멸성 비용
지연이자	연 12%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품 대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미정	미정	해당비용만큼 차감 후 입금	업체 기준에 따름	상품권이 사용된 후 반환되지 않음

--	--	--	--	--	--

※ 모바일 상품권 매체 증가 / 축소에 따라 지급대상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3년도 [데일리반점]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갱신비	[1,1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안됨	소멸성 비용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데일리반점』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해당 양수도가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가맹사업의 양도일 전일까지 가맹금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의 서비스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데일리반점』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데일리반점』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 초 가 맹 금	[7,700]	포함
계 약 이 행 보 증 금	[3,000]	없음
합 계	[10,700]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데일리반점』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철거의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당사의 상호·간판·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십만원(₩1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데일리반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 번	품 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첨 4]참조			당사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데일리반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데일리반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데일리반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구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구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서비스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구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구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구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첨 5] 참조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미시정 시 : 상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구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구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구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구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 5] 참조		POS를 통한 게시	2024년 4월 기준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구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해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

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중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데일리반점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기준 반경 500m 로 설정함.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대형 쇼핑센터, 복합건물 식당가, 관공서, 지하상가, 대학교, 버스터미널, 지하철(기차)역, 대형병원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개별약정이 있을 경우 개별약정을 우선합니다.

▶일반상권의 영업지역 안에 특수상권이 있을 경우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특수상권에 입점한 경우 배달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항후 개설 예정지)을 '미 개설지역'이라 정의하며, '미 개설지역'에 대한 신규 가맹점 개설 등의 권한은 당사의 고유권한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구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구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중재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데일리반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데일리반점**』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1년**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전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로 인한 가맹본부의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내용(관련 계약조문 : 제32조 제1항)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33조 제1항)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건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1조)을 위반한 경우
○ 영업시간 규정(제26조)을 위반한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POS등의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광고 및 판촉활동에 불참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단독광고 및/또는 단독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 삽인삽 형태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33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1800-8192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을 자격에 관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대리행사	불가	-	-	-
업무위탁	불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데일리반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 중식류 등을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데일리반점』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휴업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	------	-----

11:00~24:00 이상	연중 무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금지
----------------	-------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장 근무여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데일리반점』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단위 광고 또는 판촉

구 분	성 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체 행사	제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각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기준은 아래 표 참고)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통보 →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제품광고 +	광고비 70%	광고비 30% (각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기준은 아래 표 참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 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소셜커머스 등	제휴행사	기획비용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을 균분하여 부담	가맹점 부담액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완납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별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가맹비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가맹비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가맹비의 60%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 무,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각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 벌로서 각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별 조문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의 지연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3.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
5.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가 상기 사유(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시,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등)이 면제된 경우 소급하여 청구하며, 최근 3개월 평균매출과 잔여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5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보증보험 안내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음, 시식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4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일	
교육실시	-상품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5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2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상기 방법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거나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외에 별도로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데일리반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데일리반점』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데일리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개점 전)	3일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신상품 교육 (개점 후)	개별 산정	실비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	개별 산정	실비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 산정	실비	개점 전 교육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산정	교육생 1인당 [110] (십일만원)	매출 또는 QSC 부족, 고객클레임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귀하를 포함한 1인 이외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생 1인당 금 일백일십만원(부가세포함)의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숙박비, 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연기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1800-81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3. 설비, 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4.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데일리반점』은 2023년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이 없습니다.

[별첨 5.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짜장면	6,000	깐풍새우(중)	27,000
짬뽕	8,500	크림새우(소)	20,000
짬뽕밥	8,500	크림새우(중)	27,000
순두부 짬뽕밥	9,000	교자만두(소)	3,000
차돌짬뽕	10,000	교자만두(중)	6,000
차돌짬뽕밥	10,000	연유꽃빵(소)	3,000
게살볶음밥	8,500	연유꽃빵(중)	6,000
마파두부밥	8,500	멘보샤(소)	3,000
잡채밥	8,500	멘보샤(중)	6,000
콩국수(계절)	7,000		
냉모밀(계절)	7,000		
탕수육(미니)	8,000		
탕수육(소)	15,000		
탕수육(중)	22,000		
사천탕수육(미니)	9,000		
사천탕수육(소)	16,000		
사천탕수육(중)	23,000		
깐풍기(미니)	9,000		
깐풍기(소)	16,000		
깐풍기(중)	23,000		
유린기(미니)	9,000		
유린기(소)	16,000		
유린기(중)	23,000		
깐풍새우(소)	20,000		

※ 메뉴가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6. 제공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영에프앤비	영업표지	대일리반점
제공확인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영에프앤비 대표이사 강 인 규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영에프앤비			영업표지	데일리반점
제공확인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 본 부 : (주)영에프앤비 대표이사 강 인 규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